

군산시 공고 제2013-1546호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주차장 조례 관련법 변경된 조항 변경

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3년)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

▶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 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다.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라.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의 구체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신설)

▶ 「주차장법」 제3조~제4조의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실태조사 방법 등) 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나.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로 강화
(안 제13조의2 제2항의 별표4 제7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주차장)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례
로 위임(2012.06.29)

다. 별표4 수정 “명칭변경 및 오타 수정”

▶ 명칭변경 : 요양소=>요양병원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을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 오타수정 : 다가주주택=>다가구주택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6. 다가주주택”을 “6. 다가구주택”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 454-3774, FAX : 454-3769, 전자우편 :

doli5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전화 454-37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u>적용범위</u>) (생략)</p> <p><u><신설></u></p>	<p>제2조(<u>적용 범위</u>) (현행과 같음)</p> <p><u>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u></p> <p><u>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1. 실태조사 대상</u></p> <p><u>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u>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u></p> <p><u>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3. 실태조사 내용</u></p> <p><u>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u></p>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 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을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 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 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신 설>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시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 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 2. (생략)
- 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 1. ~ 5. (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1. ~ 5. (생략)
- ② ~ ④ (생략)

-----.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

-----.

- 1. · 2. (현행과 같음)

3. 할인요율 -----
-----.

제4조(주차거부 금지) -----

해당하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제4조 -----

-----.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교부 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생략)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2.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략)

④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의 -----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규칙 -----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01. 06.15>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 조례에서 -----

 -----.

②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을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으로 한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6. 다가주 주택” 을 “6. 다가구주택” 으로 한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을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원룸형 주택)” 으로 한다.

별표 4의 설치기준란 중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을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 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
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06.15>

③·④ (생략)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 3. (생략)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수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18
제곱미터-----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그 밖에 -----

-----.

-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 (3) 규제심사: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0차 규제개혁위원회 (. . .)와 김의 결과, 별첨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 시설 및 주차수요

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할인요율”을 “할인 요율”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을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6. 다가주주택”을 “6. 다가구주택”으로 한다.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별표 4의 설치기준란 중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을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01. 06.15>

제16조의2제2항제4호 중 “18평방미터”를 “18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의2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 2013 - 10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8. 22.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하나건설 / 대표 : 박안수
 -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번지
3. 시 공 자(변경)
 - 가. 변경전 : 문장건설(주) 대표이사 장치성
 - 나. 변경후 : 문장건설(주) ·(주)하나건설
4. 사업내용(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산북동 1-5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49,412.0000m²
 - 다. 건축면적 : 9,075.6607m²
 - 라. 연 면 적 : 114,861.8889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4동 10~18층, 952세대
 - 전용 59.9896m² 823세대
 - 전용 59.9845m² 129세대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129,959,782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 01 ~ 2014. 02
5. 설계도서 : 변경없음
6. 변경승인일 : 2013. 8. 22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 -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3-104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8월 3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군산시 수송동.미장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나. 명 칭 : 공단대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선명	시설결정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 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 원(m)	연장(m)	
도 로	대로1-1	35	5,500	23~35	5,500	5~12	700.3	미개설폭 확장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제실음생략

8. 관계도서 : 제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2-1)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1	군산시 수송동	50-7	답	394	66	강복순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 동				
2	"	49-28	도	321	30	군산시					
3	"	50-23	도	124	124	군산시					
4	"	49-42	도	157	157	군산시					
5	"	761-2	구	3,168	82	국(농수산부)					
6	"	49-17	도	7,461	3,691	국(건설부)					
7	"	891	도	77,560	7,164	군산시					
8	"	49-38	답	157	157	군산시					
9	"	49-26	답	309	309	군산시					
10	"	49-44	답	156	156	군산시					
11	"	49-24	답	158	158	군산시					
12	"	49-22	답	305	305	군산시					
13	"	49-20	답	305	305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14	"	49-18	답	306	306	공치춘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15	"	771-2	도	23	23	국(농수산부)					
16	"	771-1	도	43	43	국(농수산부)					
17	"	21-28	답	292	292	강기수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 동				
18	"	21-30	답	290	290	군산시					
19	"	21-32	답	293	293	김정모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20	"	21-35	답	294	294	성은주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1	"	21-33	도	25	25	국(재무부)					
22	"	21-37	답	290	290	정수희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				
23	"	21-39	답	292	292	김재신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24	"	21-27	도	6,170	6,170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2-2)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25	군산시 수송동	21-41	답	276	276	군산시					
26	"	21-43	답	267	267	서우석	군산시 동흥남동				
27	"	21-52	도	7	7	국(건설부)					
28	"	21-58	답	70	70	군산시					
29	"	21-45	답	196	196	군산시					
30	"	21-49	답	344	344	군산시					
31	"	21-18	철	17	14	국(건설교통부)					
32	"	770	철	3,094	313	국(건설교통부)					
33	"	21-21	철	1,124	74	국(건설교통부)					
34	"	21-25	도	245	175	국(건설교통부)					
35	"	21-47	수	26	26	국(건설부)					
36	"	21-46	도	141	141	국(건설부)					
37	"	761-7	구	16,968	296	국(농수산부)					
38	군산시 미장동	472	천	14,443	159	국(농수산부)					
39	"	57-47	구	6,229	1,3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0	"	58-55	도	13	13	국(건설부)					
41	"	58-69	도	3	3	양철용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 동				
42	"	58-107	전	13	13	군산시					
43	"	58-82	전	26	2	이형복	군산시 개사동				
44	"	57-89	구	288	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	"	57-120	구	10	1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6	"	58-101	전	4	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7	"	58-108	도	3,831	275	국(건설부)					
48	"	58-48	도	4,672	262	국(건설부)					

군산시 고시 제2013-105호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8월 3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m ²)		실시계획인가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 시행		금회 시행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총괄	군산대학교	80,351	249,270	66,645.29	208,746.84	67,271.92	214,354.57	
신청 부분	게스트하우스	3,000	11,000	-	-	626.63	5,607.73	지하1층 지상13층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대학교 총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4.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계획실용 생략
7.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3 - 106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2	주차장	금동 2-3	2,097	감)60	2,037	군산고439 (2003.6.24)	

2.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3-107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2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9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3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3/2014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3-1596호

2013/2014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28

군 산 시 장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비고
			주소	성명		
군산면허 제5621호	패류양식	10	군산시 옥도면 명도리	명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2013. 8. 28 ~2018 8. 27	
군산면허 제5622호	패류양식	10	군산시 옥도면 명도리	명도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2013. 8. 28 ~2018 8. 27	